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해체 경험\*

민기연\*\* · 이영선\*\*\*

### 국문요약

‘다문화 결혼’으로 일컬어지는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여성들의 경제적 동기, 한국사회 결혼시장의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 등과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 이혼 역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가정해체, 이혼 등을 다룬 많은 연구에서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관련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미 자리 잡은 결혼이주여성을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다문화 가정의 해체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연구자는 가정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4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른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해체’와 ‘다문화 이혼’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정해체 과정, 결혼생활의 현실 자각, 이혼 이후의 삶 크게 3가지 주제로 최종 범주화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가정해체 경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결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0949).

\*\* 제1저자,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008kku@hanmail.net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ylee@inha.ac.kr

##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18년 기준 236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한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포함된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33만 5천 가구로 가구원 수는 100만 9천여 명에 이르며, 그중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은 26만여 명 이상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다(통계청, 2019a; 통계청, 2019b). 인구 구성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 집단'으로 규정되는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고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하였고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결혼 중 다문화 결혼의 비중은 9.2% 정도인데, 다문화 결혼으로 흔히 분류하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67%에 달한다(통계청, 2019a).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다문화 결혼은 우리나라 결혼 시장의 불균형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이 맞물리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후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 역시 증가하여 왔다. 불법 결혼중개업체 난립으로 인한 국제결혼 사기피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등은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는 다문화 결혼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문제점과 갈등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결혼이민(F-6)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

은 9.4%로,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이혼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통계청, 2019a). 다문화 결혼은 부부간 큰 나이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 언어가 다른데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결혼의 목적이나 이해관계의 차이 등 그 자체로 많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시작되기 때문이다(박영주·윤동화·강원진, 2015; 박진근, 2010; 설동훈 외, 2005).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된 1,133건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가출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이 가장 많았고,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과 자신의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이 가장 많았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현재 한국인 남편과 이혼·별거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10.2%가 학대와 폭력을 이혼 사유로 꼽았다(최운정 외, 2019). 다문화가정의 해체 또는 이혼 사유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남편의 가정폭력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출이라는 점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김희주, 2018; 정도희, 2012). 결혼이주여성이 취업과 한국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또는 사기 결혼을 하여 가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가출은 많은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이 가출의 일차적인 원인이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

물론, 가정폭력은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주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더 빈번하며 폭력의 수위가 높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전수조사 통계자료 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김은정·장명선·정순돌·조숙현·허영숙, 2017). 또한 경찰청의 '다문화가정 폭력 검거건수 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6년간 4,515건이 보고되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된 사건에 한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실제 결혼이주여성들은 더 광범위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이에스더, 2019/10/22).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네트워크 제한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한국인 피해 여성에 비해 훨씬 어렵다(박영주 외, 2015).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주변의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31.7%)’는 응답이 ‘있다(27%)’는 응답보다 많았고, 도움이 부재했던 이유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등으로 답하였다(김은정 외, 2017). 비자와 국적 취득 등 체류관련 문제도 이들이 남편의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미등록 체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구제절차가 종료되면 결혼이주여성의 미등록 체류지위로 인해 한국 체류가 대부분 불허된다. 또 어렵게 신고하여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린다 해도 가정폭력 문제를 피해자 관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과거에 비하면 이혼에 대한 사회의 허용적 태도가 증가했고 이혼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회 분위기나 법·제도 모두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며,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정부정책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다는 가족유지가 핵심인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력 부재, 자녀문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체류와 관련한 법적지위 문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곽영길·오세연,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여전히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합한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며, 이 정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만이 지원의 대상이다(박진근, 2010).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많은 초기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 그 자체나 가정해체 위기 문제는 연구자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토,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현옥, 2015). 한편으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만족도, 결혼생활 및 한국사회 적응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혼율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며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 실태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실태를 살피는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가정 내 갈등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더 초점을 두어왔다(고기숙, 2010; 김오남, 2006; 김이선·김영란·이해응, 2016; 설동훈·윤홍식, 2008; 설동훈·이계승, 2011; 한숙희, 2010). 이후로 다문화가정해체에서 파생한 사회문제들이 대두하면서부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해체 예방과 위기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가정과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증재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문정화, 2017; 우복남·장은정, 2016; 윤향희·서은숙, 2014).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해체 및 이혼 경험과 이혼 후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입장에서 살펴 본 질적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김하영·강버들, 2019; 이해경, 2015; 이현주, 2013), 결혼이주여성 이 별도의 정책집단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해체는 예방에 힘써야 할 문제이지 반대의 경우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발맞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해체 경험, 이혼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가정해체 또는 이혼의 원인과 현상은 다양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언제나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체 위기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가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정이 구성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부부 당사자 어느 한쪽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가정해체 또는 이혼이 여전히 지양해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있고, 사유에 따라서 가정해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원활한 이혼 진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부 당사자에게 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며, 이혼을 통한 가정해체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으로서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여성’이라는 또 하나의 약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가

정해체 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이후의 삶에서 예상되는 더 큰 사회적·제도적 차별을 감당할 만큼 현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결혼이주여성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의 내용이 어떠한가는 왜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감내를 요구하는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한국여성에게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겠다. 그동안 변화된 여성의 지위나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대한 기준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분명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가정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정해체 과정을 역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 측면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구성과정을 비난하거나 이혼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다문화가정 해체를 막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인권적 관점에서 해체가 불가피한 다문화가정을 건강하게 해체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작 의도이다.

연구자는 다문화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했으나 결국 스스로 이혼을 선택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른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해체'와 '다문화 이혼'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연구 초기에는 출신국뿐 아니라 결혼동기, 결혼과정,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 연구참여자의 균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여 년이 경과 하면서, 현재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연구 주제의 특성상 지극히 개인적인 결혼과 이혼 경험, 어려움을 인터뷰어에게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모집 기준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나 학력, 직업, 한국거주 기간 등에 따라 한국을 접하는 기회나 수준에 차이가 있고 한국사회 적응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후 한국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특성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초기 계획을 수정하였다. 출신국, 결혼동기, 결혼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두지 않고, 우리가 흔히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하는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중 본인의 선택으로 이혼을 했거나 이혼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해온 상담전문가들로부터 가정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을 소개 또는 추천받았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어야 하는 연구 참여를 제안하였을 때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참여자는 면대면 면담 가능 여부,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4명의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A, B, C, D는 국적과 나이, 결혼·이혼 과정의 경험이 다른 4명의 결혼이주여성이며, 기본정보는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A, B, C, D로 부호화하여 표기했으며 그 외 개인

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연구자가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참여자	A	B	C	D
나이	1968년생 (만51세)	1985년생 (만34세)	1975년생 (만45세)	1974년생 (만44세)
현재 국적	한국	베트남 (F-6-1, 결혼이주비자)	한국	필리핀 (F-6-2, 거주 비자)
출신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필리핀
최종학력	대졸	대졸	고졸(대학중퇴)	고졸(대학중퇴)
본인 직업	비정규직	없음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 남편 직업	없음	없음	없음	일용직
전 남편과 연령차	28세 연상 (아내 초혼, 남편 재혼)	14세 연상 (초혼)	8세 연상 (초혼)	12세 연상 (초혼)
자녀	없음	2014년생(만5세) 딸, 2017년생(만2세) 딸	없음	2001년생(만18세) 아들, 2005년생(만14세) 딸
결혼과정	연애결혼	연애결혼	종교단체 주선 중매결혼	종교단체 주선 중매결혼
결혼기간	1997년 결혼- 2011년 이혼 (약 13년)	2013년 결혼- 2016년 이혼 (약 3년)	2003년 결혼- 2013년 이혼 (약 10년)	1999년 결혼- 2016년 이혼 (약 17년)
이혼과정	협의이혼	재판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

연구참여자 A는 인도네시아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한국인 남편과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자녀는 없으며 한국인 남편과의 협의이혼 후 한국에서 만난 파키스탄인 두 번째 남편(1982년생)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구참여자 B는 베트남 소재 한국회사에 근무하며 관리자인 남편과의 사내연애를 통해 결혼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베트남 국적자이고,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남편과 결혼 전(1997년-2000년) 취업비자로 한국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후 필리핀 한국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인 목사의 소개로 남편



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는 필리핀 지인의 소개로 종교단체를 통해 남편과 결혼하였고, 결혼 직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필리핀 국적자이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4명의 연구참여자(대상)를 반구조화 된 1:1 심층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진행하여 질적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 주제의 특성상 타인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인터뷰어에게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라포형성으로는 유의미한 심층면담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현장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오랜 기간 상담해 온 상담전문가를 인터뷰어로 따로 선정하였다. 상담전문가는 연구참여자(대상)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도록 도울 수 있고, 연구자가 면담을 한다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놓칠 수도 있는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면담 가이드라인은 가정해체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예: 박미정·엄명용, 2015; 이진석, 2018 등) 분석을 바탕으로 초안을 구성하였고, 인터뷰어인 상담전문가와 내용 검토를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 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인터뷰어에게 핵심적인 면담 가이드라인과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실제 면담은 연구참여자(대상)들의 일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담전문가인 인터뷰어의 주도하에 진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참여자(대상)의 참여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구두로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연구참여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설명한 뒤 서면으로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서면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면담 내용의 녹음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였다. 면담은 최소 1회~최대 2회, 최소 60분 이상~최대 90분까지 진행하였으며, 녹음된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전사하고 녹음내용과 전사본의 일치여부를 재확인 한 뒤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어는 결혼이주여성의 배경정보, 결혼~이혼결심까지의 과정(배우자의 정보, 만남과정, 결혼생활의 어려움, 이혼의 주요이유, 이혼을 주저한 이유),

이혼 진행 과정(법적 절차, 도움여부 등), 이혼 이후의 삶(사회/경제적 상황, 정책적 지원여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였다.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자의 의견 제시를 최소화하며 면담을 진행하되,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 세부 질문을 추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언어의 한계로 인해 답변을 어려워하는 경우, 질문을 수정하여 다시 질문하였고, 언어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답변을 꺼리는 경우 답변을 강제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 연구참여자가 감정이 폭발쳐 울기 시작할 때에는, 면담이 상담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가 감정을 조절하고 울음을 멈출 때까지 면담을 중단하고 기다려 주었다. 면담 종료 이후 면담 내용의 누락, 진위여부를 인터뷰어와 교차 검토하여 피드백을 받았고, 연구주제와 무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거나, 사실 확인 결과 거짓을 말하는 연구참여자의 답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회의 면담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의 경우 면대면 면담이나 전화, 이메일 면담 등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Seidman, 2013).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정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이들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 이혼이 다뤄지는 방식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고, 각각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험과 예외적인 경험에 집중하여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말을 최대한 그대로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어 구사의 한계로 인해 자국어나 영어로 짧게 답변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본문에서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인용할 때는 (연구참여자)로 출처를 표기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된 면담 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일차 검토하면서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담고 있는 면담의 핵심내용과 주요 범주가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코딩하였다(Corbin & Strauss, 2014). 연구자들은 분석 과정에서 면담 당시에는 간과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거나, 연구자들의 관점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 하여 해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되, 연구자들의 지나친 주관성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Alberti-Alhtaybat & Al-Htaybat, 2010). 자료의 범주화 과정에서 연구자간 논의를 거쳐 재범주화, 범주화 삭제 등 범주화에 대한 수정이 여러차례 반복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가정 해체 과정, 결혼생활의 현실 자각, 이혼 이후의 삶 크게 3가지 주제로 제시하였다.

####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다문화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였으나 결혼생활의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보다는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결국 스스로 이혼을 선택한 결혼이주여성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주제의 민감성과 연구참여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책임감이라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뷰어는 연구참여자와 최소한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일부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해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추적하고 이해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계에 대한 부담으로 연구참여자의 거절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요청이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절차적 접근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참여자가 참여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나, 혹시 있을지 모를 우려를 감안하여 인터뷰어와 라포는 형성되어 있되, 상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참여자만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설득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으며, 참여 의사는 있으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연구참여자 관련 정보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연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의 정보 관리에 각별히 주

의를 기울였고,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참여자 개인 식별이 가능한 내용은 삭제하였다.

### Ⅲ. 연구결과

심층면담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정 해체 과정, 결혼생활의 현실 자각, 이혼 이후의 삶 크게 3가지 주제로 최종 범주화 되었으며, 주제들은 각각 2가지 하위주제로 정리되었다(〈표 2〉 참고).

〈표 2〉 연구결과 요약

주제	하위주제
가정 해체 과정	결혼생활의 위기-자녀출산 반대, 남편의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남편의 협박, 제한적인 관계망
결혼생활의 현실 자각	결혼생활 유지 이유-남편에 대한 사랑 이혼 선택-최후의 선택
이혼 이후의 삶	이혼한 결혼이주 여성의 삶 이혼 후 되찾은 삶

#### 1. 가정 해체 과정

##### (1) 결혼생활의 위기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동기와 과정은 다양하였지만, 참여자 모두 결혼생활의 어느 시점부터 스스로 결혼생활의 문제점과 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갈등원인을 다룬 연구들에서 흔히 보고되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친절을 지원하기 위한 아내의 경제활동 욕구는 연구참여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결혼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능보다는 시댁 식구들의 비상식적인 결혼생활 개입, 강제낙태와 낙태 강요, 남편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외도 등이 결혼생활의 위기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다.

## 1) 자녀출산 반대

다문화가정은 구성과정의 특성상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 부부 가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게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의 결혼과정이 각기 다른 이유도 하나의 원인이겠으나, 참여자 A와 C는 자녀출산문제에 있어 남편과 가족들이 출산을 극구 반대하는 예외적인 경험을 하였고, 이는 참여자 A와 C가 남편과 갈등을 빚고 이혼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 A는 결혼 초기 임신을 하였으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모에 의해 강제낙태를 경험하였다. 이후에도 참여자 A는 적극적으로 자녀를 원했으나, 초혼인 참여자 A와 달리 재혼이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참여자 A의 자녀출산을 반대하였다. 참여자 A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A와 아무런 논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는 참여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한번 임신했어요, 한국에 와서 바로 임신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애기를 싫어해서, 한국말도 못하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했어요. 시어머니가 애기를 싫어해서... (Q: 낙태수술을 모르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임신을 해서 수술하고... -중략- 여자가 아기가 없으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말 안하고 정관 수술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C는 남편의 불임을 원인으로 불임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뇌전증 병력을 숨긴 채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참여자는 남편의 병력을 알게 된 이후 오히려 남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자녀를 갖기 원하였다. 그러나, 남편과 남편 가족들이 오히려 임신을 강하게 반대하며 부부의 결혼생활에 개입하였다. 이는 참여자 C에게 큰 상처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다.

아주버님이 임신은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도요. 남편은 간질이 있다고. 얘기가 간질 있으면 어떡하냐고... -중략- 필리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얘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자 마음은 달라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도 얘기를 키울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C>

## 2) 남편의 가정폭력

연구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이혼사유로 가정폭력을 가정한 것이 아니었고, 참여자 절반은 종교단체 주선이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아닌 연애결혼을 한 경우였지만 참여자A의 첫 번째 남편을 제외하면 모두 결혼 초기부터 연구참여자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한국인 남편들은 낮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아내를 지지하고 적응을 돕기는커녕 처음부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결혼 초기 한국에서 남편 외에는 지지기반이 없었던 참여자들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나 경험이 거의 없고, 한국말이 서툴렀던 D는 결혼 초기에는 남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에 비용을 지불한 남편은 참여자를 배우자로 존중하지 않았다. 불평등한 부부간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선 남편은 부부 싸움을 할 때면 돈을 돌려주고 혼자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폭언하며 폭행하였고 외도 또한 지속하였다.

난 임신했는데, 자기도 아는데 세계 때려서, 어지러워서 울고불고... 얼마나 아픈데요. 그러니까 이 (욕설) 왜 울어! 센터 다시 가! 자기 돈 다시 달라고요. -중략- 제 생각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데,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싸움 이후) 남편이 센터에 가서 다시 가라고. 내 돈 다시 달라고... (남편이 외도를 하는) 여자를 알았는데... 참았어요. 어차피 얘기 있는데... 애기 낳고 00이 5살 때, 유치원 3년 다닐 때요. <연구참여자 D>

참여자 B는 베트남에서 4년간의 사내연애를 통해 충분한 교제 기간을 거치

고 결혼하였으나,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자 B의 외도를 이유 없이 의심하며 폭언하고 폭행하였다. 참여자 B는 한국사회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시작된 남편의 폭력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며 더 심해져 이혼결심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남편은 술 먹으면 막 때렸어요. 하지만 다음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에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지나갔어요. -중략- 결혼 한 후에 남편이 저더러 처녀가 아니라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 창녀, 걸레라고 욕했어요. 알았으면 결혼 안했다고, 결혼하고 바로 호텔에서 때리고...  
<연구참여자 B>

## (2) 이혼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통계상으로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들은 약 6:4 정도의 비율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진행한다(통계청, 2019a).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재판이혼의 법적 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감, 자녀양육 협상에서 불리한 법적지위 등을 이유로, 남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며 협의이혼을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혼위기에 직면했을 때나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기관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고, 혼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 1) 남편의 협박

참여자들의 남편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빌미로 이혼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참여자 B의 남편은 결혼 초기 참여자가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혼을 하게 되면 베트남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여자가 이혼 후 자녀양육을 원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이를 직접 양육할 생각이 없음에도 '아이를 볼 수 없게 하겠다'라는 말로 참여자 B를 협박하였다. 참여자 B는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에

게 허가하는 결혼이민비자(F-6-1)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의 이혼 거부로 결국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혼소송의 복잡한 절차와 본인의 체류자격 문제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남편은 영주 비자가 없는 참여자 B가 재판에서 양육권을 갖지 못하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면 한국 국적인 자녀들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살 때 이혼을 생각했는데, 너 이혼하면 OO이(아기 이름), 베트남 가족들 죽어버린다고, 저는 진짜 무서워서... -중략- 저는 (아기 두고) 베트남에 못가요. 애기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 산거야... (남편이) 서로 정리하면 저는 한국 비자가 없어서 한국 방문 못한다고, 저는 베트남에 가게 되면 OO이 못 보게 되어서 한국에서 살아야 해요. <연구참여자 B>

참여자 D의 남편 역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참여자의 체류자격을 빌미로 협박을 하였고, 참여자 D는 남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공적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남편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겼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참여자 D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는 남편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참여자 D는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협의이혼 했는데, 법원에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는 것 없이 혼자 갔어요. 협의이혼 서류에는 엄마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써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아이들을 못 만난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들 만나려고 남편한테 한 달에 50만 원을 줘요. <연구참여자 D>

## 2) 제한적인 관계망

참여자들은 이혼을 처음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기는 어려웠다.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주변인들은 참여자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이거나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의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이혼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 후에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이들의 이혼 결심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참여자들에게 이혼을 권유하기가 더 어렵기는 하겠지만, 결혼을 유지할 만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 참여자들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결혼생활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고민을 털어놓은 상대가 참여자에게) 너는 지금 엄마니까 애기 잘 키워라, 남편한테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서 알았어, 잘 할거야 그렇게 말 했는데 (남편의 가정폭력이 지속됨) <연구참여자 B>

아는 언니에게 나 그냥 필리핀 돌아갈까? 했었는데 언니가 너 미쳤어? 너 임신했는데 어떻게 필리핀에 가. 돈 있어? 필리핀에 가면? 애기는 어떻게 하고, 그냥 참아라. 남편한테 더 잘하고, 애기 나오면 남편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연구참여자 D>

한국 사람들, 친구도 있고 가끔 만나지만 내 생활 말 안했어요. 우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했어요. <연구참여자 C>

## 2. 결혼생활의 현실 자각

### (1) 결혼생활 유지 이유

결혼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아니었

고 누가 보아도 부당한 결혼생활이었지만, 이들은 이혼을 선택하기보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출신국에서도 이혼은 긍정적인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 또한 참여자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 1) 남편에 대한 사랑

참여자 대부분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이혼을 주저하고 결혼생활을 버텼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A는 자녀출산 문제로 지속된 갈등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나 불만보다 고마움과 사랑의 감정이 더 크고, 결혼생활 동안 병든 시어머니를 수년간 간호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불임수술을 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혼생활의 의미해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저 1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월급봉투 남편한테 안 받았어요. 어머님이 아빠(남편)가 나이 많으니까 니가 나가서 빨리 돈 벌어오라고 -중략- 어머님이 당뇨가 있었어요. 집에서 제가 다 케어했어요. 집 앞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와서 청소하라 그러고. 남편은 일 안해도 사랑해요. 저는 원래 부지런해서... 결혼생활 동안 많이 열심히 살았어요. 아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편에게 나쁜 감정은 없어요. <연구참여자 A>

그것만으로 괜찮았는데~ 결국은 이혼한 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남편이 계속 거짓말하면서 못 갖게 하고... <연구참여자 A>

참여자 C 역시 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후 자녀출산을 거부하고 폭언과 폭언

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참여자 C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병을 핑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을 안쓰러워하며 남편 대신 일자리를 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참여자 C 역시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부부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사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OO언니가 남편이 간질병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인지) 물어보라고, 신랑은 몰라 가지고. 법을 몰라요. 그런데 생활비가 40만 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그거 받으면 일 못해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중략- 남편이 간질병이라서 일을 못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여기(사는 지역)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자조)모임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연구참여자 C>

근데 여기 (한국) 와서 내 생활이 힘들어서 왜 남편은 계속 집에 있는지, 뭐 하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싫어해요. 어머님 음식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거.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데). 남편한테, 우리 계속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계속 어머니한테 돈줘 돈줘 그러면 안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연구참여자 C>

참여자 B는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며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였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무서워요. 그래서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혼하고 싶었는데 부부상담을 한 후에, 당신 성격을 바꾸면, 술 안먹고 베트남에 가서 일 잡고. 상담을 하고 이혼 안하기로 얘기했어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아기를 생각하면 (남편이 술만 먹고 때리니까), 잘 키우고 싶어서. <연구참여자 B>

## (2) 이혼 선택

참여자들은 결국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대신 가정을 해체하는 이혼을 선택하였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유지 기간은 3년~17년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결혼유지 기간이 짧은 참여자 B의 경우도 감정적 대처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결혼생활 중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부부가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하였다.

### 1) 최후의 선택

참여자 대부분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혼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참여자 B의 경우 4년간의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3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별거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에게 관계개선의 기회를 주었다. 참여자 D도 남편에게 여러번 관계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알고 난 이후에야 이혼을 선택하였다. 이혼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겠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 진행 과정에서 한국인과 비교할 때 수많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참여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 어떻게 이혼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 참여자 D는 무작정 법원에 찾아가서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기도 하였다.

만약에 남편이 첫 번째 한 나쁜 행동이면, 그냥 노력해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첫 번째 행동으로 이혼은 아니에요. -중략- 나도 이혼한다고 생각하면 남편 안쓰러워요. 근데 아기만 생각하면... 우리 남편은 바뀐 점이 없어. 똑같아. 똑같아요. 그날 (이혼을 재고하기 위해 상담을 받은 날) 또 싸웠어요. 남편은 제 머리를 잡고 벽에다 치고... <연구참여자 B>

이혼하기 전에 남편을 봐주고, 그냥 한번 봐주고, 안되면 노력해야죠. 나도 노력했는데, 참았는데 남편은 변한 거 없이 계속 똑같으니까 그건 참을 수가 없어서 -중략- 더 이상 감당이 안돼요. 작년에는 경찰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연구참여자 D>

(이혼을 결심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는 게 없어서. 내가 혼자 법원에 갔어요. 000에 있는 법원. 거기 갔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싸울 때는 항상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자. -중략- 이제 내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그냥 물어봤어요. 어떤 서류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신랑 같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이 서류가 필요하고, 남편도 와야 하고. <연구참여자 D>

또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이혼 의도를 오해 받은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문화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되는 위장결혼에 대해 참여자들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은 국적취득이나 남편의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자 C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였음을 언급하며, 이혼은 결혼생활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필리핀 사람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 우리 엄마들은, 우리끼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한국 국적 있으면 바로 이혼해. 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라고. 근데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게 못해요. <연구참여자 D>

제가 한국 국적을 받았어도 남편이랑 이혼 안했어요. 제가 2008년에 한국 국적을 받아서 2013년에 이혼했어요. 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나만 했어요. -중략- 처음에는 이혼을 결정하고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랑 계속 살아도 똑같아요.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  
<연구참여자 C>

### 3. 이혼 이후의 삶

#### (1)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삶

마지막 주제 범주는 한국사회에서 ‘이혼여성’이자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삶을 당사자와 주변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하였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이주를 선택했건, 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결혼이주를 선택했건 간에 상관없이 이들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 것은 사실이었다. 참여자들은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여겨 부끄러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슬픔을 느끼기도 하였고, 결혼 주선자인 목사의 말만 믿고 결혼을 결정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남편 한국 사람이고, 이제 나도 한국 여자(한국 국적 취득함)로 이렇게 알아요. 친구들과하고 연락하지만 (이혼이) 창피해서 얘기는 안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기는 조금 창피해요. 내 친구들은 다 성공해서 엄마만 (이혼 한 것을) 알아요. 인도네시아로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원래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연구참여자 A>

모임에 나가면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은 아기 있고, 남편 있고, 그냥 다 행복해요. 근데 지금 나 몇 살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아기가 없다는 의미). 나만 이렇게... 시간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연구참여자 C>

목사님도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신랑 월급이 US 달러로 2,100달러라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3일 만나고 바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지금은 후회가 돼요. <연구참여자 D>

한편 참여자들이 이혼을 처음 결심했을 때 주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

적이었지만, 참여자 D의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이 어머니인 자신의 이혼결정을 반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 주었고, 주변인들도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먼저 큰 아이한테 상담, 얘기했어요. 아이가 (이혼을) 인정했어요. 아이들 이 이혼(결정) 잘했다고, 아이들이 다 컸으면 이제 자기 인생도 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신랑하고 같이 살았으면 계속 똑같아요. 나한테 돈 달라고 하고, 술 먹고. <연구참여자 D>

## (2) 이혼 후 되찾은 삶

앞서 참여자들이 이혼 후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이혼 후 혼자된 삶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상상했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혼 전의 삶을 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능력한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할 때보다 혼자 삶을 계획하고 생계를 꾸리는 지금이 더 여유롭고,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이혼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재 참여자들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주거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의 한국살이가 여유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혼이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참여자들도 체류자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한국 사람 좋아요. 요양원 일도 힘들어도 재밌어요. 1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남편한테 월급봉투 안 받았어요. 지금은 4대 보험 빼고 130만 얼마 정도 벌고, 즐기면서 살아요. (얘기 도중 눈물) 결혼생활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다시 기억나요. -중략- 너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A>

지금 한국말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 가는 것

보다는... 제가 돈만 벌면, 저는 OO이 한국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돈 많이 들어가겠지만, 가능하면 여기(한국) 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B>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계속 살아도 똑같았어요. -중략- 이혼했을 때가 더 괜찮아요. 좋아요. 이혼하기 전을 색으로 말하면 회색이지만, 지금은 하늘색? 핑크색? 지금 직장에도 다니고 좋아요. 월급 받아서 세금도 내요. 난 한국 사람이예요. <연구참여자 C>

이혼 전에는 서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혼하고 난 지금은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서 노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연구참여자 D>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했으나 결국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고, 가정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해 이들의 결혼과 가정해체 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 해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분리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위기 다문화가정을 잘 해체하고, 그 구성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남편의 자녀출산 거부, 가정폭력, 외도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흔히 보고되고,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이혼을 고려하는 주요인인데 반해(고은주·김고은·박연주, 2014; 박신규·



이성희, 2014),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빈곤이 결혼생활의 결정적 위기 요인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참여자 D를 제외하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남편 대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였다.

또 이들은 결혼이주여성을 약자적 지위로 만드는 법과 제도, 이를 악용한 남편의 협박, 남편에 비해 한국의 법과 제도에 무지했던 탓에 이혼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당함을 겪어야 했다. 참여자들은 이혼의 절대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에도 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결혼생활 중 자녀를 혼자 양육하다시피 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남편에게 자녀양육권이 돌아갔다. 다른 사례를 보아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친권이나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갖기가 쉽지 않다(김상찬·김유정, 2011). 2004년에 혼인파탄에 따른 간이귀화제도가 신설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자격(F-6) 연장을 요청할 때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2011년에 폐지되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 할 때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강혜숙, 2019). 그래서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들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등을 법정에서 다투야 하는 재판이혼의 비중이 한국인 부부의 경우보다 오히려 높다(통계청, 2019a; 통계청, 2019c). 협의이혼을 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귀화가 불가하므로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법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해소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한국국적도 영주권도 없는 참여자 D의 경우 자녀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면접교섭권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 남편은 이를 악용하여 참여자의 면접교섭권 이행을 방해하고 양육비를 요구하였다.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이 제한적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심각한 가정 폭력 등 인권 침해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혼과정

에서도 한국인 부부와는 다른 법적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김이선 외, 2016). 참여자들의 경우 교류하는 주변인들 대부분이 이들의 결혼생활이 어떠한지 알고 있음에도 이혼을 만류하여 참여자들이 이혼을 주저하고 결혼생활을 더 유지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은 단순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상황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으로, 삶의 선택지가 제한적인 결혼이주여성 입장이라 하더라도 결혼생활의 유지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사람다운 삶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우리 국민의 배우자로서 소속을 둔 기관의 관련인들은 참여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결혼이주여성 관련 문제 인식에서 연구자들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현실적인 문제를 더 고려한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의 아내로서 지위를 가질 때에는 한국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다문화가족지원법 하)이 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경계를 벗어나면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관련 이슈가 주기적으로 대두되었음에도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스스로 이혼을 선택한 가정해체의 당사자이지만,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가능한 이혼에 신중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혼보다는 서로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는 이런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익숙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의 기준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더 낮게 적용된다. 참여자들은 남편과 가족들의 가정폭력을 그냥 참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주변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가정사로 취급하였다. 또 참여자들은 각기 다양한 과정을 거쳐 결혼에 이르렀으나, 출신국만을 이유로 우리가 흔히 다문화가정이라고 통칭하는 그룹의 결혼이주여성으로 분류되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쉽게 의심 받았다. 하지만 참여자 중 절반은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지막까지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였다. 나머지 연구참여자들도 한국 국적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가정해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더해, 다문화 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에게 정신적·신체적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실수로 이해받을 수 있는 종류의 행위가 아님을 알게 하는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전제되어야 함이 강조되지만, 역설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이 취약한 집단을 고르자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열등감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을 빼놓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보다는 남편의 정신적·신체적 학대였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을 보호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고려하여 현재 수준보다 귀화요건을 완화하거나 법으로 이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윤현석·안성훈, 2015; 장은정, 2017). 하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될 때까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적, 가족, 근로관계 등에 대한 법률 교육과 상담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의식주 문제해결을 위한 취업 지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절반이고,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후유증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정해체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은 분석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이나 자살문제 등 사회문제로 전이되기 쉽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관련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다문화가정 해체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해진 후 소요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들의 가정해체 과정에서 경찰의 조력을 제공하거나 이혼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된다.

셋째, 참여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이혼 후 찾아온 현재의 평온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아직 복지서비스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고, 결혼생활 내내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혼자가 된 후에 더 나아졌기 때

문이다. 하지만 주관적 만족감과 별개로 객관적 상황을 보았을 때, 참여자 B의 사례처럼 국적 미취득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영역에서의 제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은 법적·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가진 본국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저임금의 비정규 일자리에 고용되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쉽다(이진석, 2018). 따라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참여자들과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상황, 가족형태에 잘 적응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예: 제3차 외국 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내 사례 -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를 기르는 외국인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 여성 대상 시설입소 지원 등).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도 함께 요구된다. 이들을 이주민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가정해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과 가치에 깊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단기간에 하나의 결론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혜숙 (2019).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등록과 미등록 사이”. UN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7-40. (4월 24일). 서울: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고기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229-259.
- 고은주·김고은·박연주 (2014). “메타분석을 활용한 국내의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비교연구”. 『국제지역학회』 18(3), 293-316.
- 곽영길·오세연 (2010).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217-238.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연구”. 『가족과 문화』 18(3), 70-92.
- 김은정·장명선·정순돌·조숙현·허영숙 (2017).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1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이선·김영란·이해응 (2016).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2016 연구보고서-3).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상찬·김유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43, 319-344.
- 김하영·강버들 (2019).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사별 후 홀로서기 삶에 관한 경험”. 『수산해양교육연구』 31(5), 1285-1295.
- 김현옥 (2015). “다문화가정교육프로그램연구의 경향분석: 2006~2014년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12(2), 45-71.
- 김희주 (2018).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30(2), 129-170.
- 문정화 (2017).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단독으로 상담에 참여한 중국출신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5, 91-128.
- 박미정·엄명용 (2015).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67(2), 33-60.
- 박신규·이성희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 분석 및 지원방안: 전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9(2), 112-137.
- 박영주·윤동화·강원진 (201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해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163-188.
- 박진근 (2010).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양육권의 결정”. 『법과정책연구』 10(3), 1117-1142.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설동훈·이계승 (2011).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우복남·장운정 (2016). 『충남 다문화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기본연구과제 2016-2). 대전: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윤향희·서은숙 (201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혼의 원인분석을 기초로 하여”. 『윤리연구』 9, 91-121.
- 윤현석·안성훈 (2015).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6(4), 173-192.
- 이에스더 (2019). “33만 가구 넘어선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5년새 10배 급증”. 『중앙일보』 (10월 22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611169> (검색일: 2019.11.22.).
- 이진석 (2018). “해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베트남 여성결혼 이민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3), 771-783.
- 이혜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29-54.
- 이현주 (2013).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171-214.
- 장운정 (2017).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해체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1), 80-109.
- 정도희 (2012).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 12(5), 31-57.
-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 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9a).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9b).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9c). “2018년 혼인·이혼통계”. 대전: 통계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 “2017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이혼상담 통계”.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숙희 (2010).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가족법연구』 24(1),

111-148.

- Alberti-Alhtaybat, L. V. & Al-Htaybat, K. (2010). "Qualitative accounting research: an account of Glaser'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Accounting & Management*, 7(2), 208-226.
- Corbin, J. &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eidman, I. (2013).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4th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Qualitative Research on the Family Dissolution Experience of Marriage Migrant Women

■ Min, Kiyeon\* · Lee Youngsun\*\* ■

The researcher examined the experience of married migrant women who have settled in Korean society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is now called "multicultural marriage" in Korean society, but is in the process of divorce, and as a part of a solution to family crisis, the researcher tried to address feasible way of healthy demol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purposive sampling and in-depth interviews on married migrant women from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classified as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were conducted. Result of analysis, process of family disorganization, awareness of the realities of marriage, the life after divorce, the study overall could be categorized into 3 main topics and 6 sub topics. The following research has limitations on generalizations of its conclusions and slight differences compared to the existent researches due to the fact that this research aimed for an in-depth interview targeted towards a small participant population.

**Key words:** Family Dissolution Experience,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Marriage

투 고 일 자 : 2019년 12월 16일  
심사완료일자 : 2020년 01월 31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02월 11일

---

\* First Author, Ph.D. Candidate,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2008kku@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ylee@inha.ac.kr